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9. 9. 1.] [특허청 훈령 제946호, 2019. 8. 1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지식재산기본법」 제17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국가예산을 수반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이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연구개발의 기획, 선정 및 평가 등의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특허동향조사"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술동향 및 기술수준, 주요 연구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정보를 기술별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3. "선행특허조사"란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가 이미 특허 등에 공개된 것인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특허기술동향조사"란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조사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통하여 수행되는 특허조사를 말한다.
5. "사업대상"이란 특허기술동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특허청장이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말한다.
7. "수행협력기관"이란 「지식재산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중 특허조사 인력, 시설 등 조사능력을 갖추고 특허검색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과제관리자"란 주관기관에 근무하는 특허전문가로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기획, 평가·관리, 성과확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9. "연구기획위원"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기획에 참여하는 산·학·연·관 전문가를 말한다.
10.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이라 한다)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가 예산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지원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 운영체계

제4조(지재권발전심의위원회) ① 특허청장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 관련된 지재권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재권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산·학·연·관 9인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특허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 대상 확정, 수행 결과 평가, 사업 관리 및 이의신청 등 사업 운영 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 관련된 지재권 발전방향 기획·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주관기관) ① 특허청장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기획, 운영 및 관리
2. 수행협력기관 선정·평가·관리·감독
3. 특허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4. 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 검토 및 평가
5. 특허동향조사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
6. 연구기획위원 및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7. 연구기획위원회에서 활용된 특허분석 현황 및 사업 성과 분석
8. 그 밖에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대 기술분야(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별로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특허청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주관기관이 진다.

⑥ 주관기관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협력기관의 등록, 선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 평가 기준 등 별도의 사업수행 관리 및 운영지침(이하 “관리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행협력기관) ① 수행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위한 특허검색 및 분석
2.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작성
3. 특허동향조사 완료 후 통계용 데이터베이스 정비
4. 특허동향조사 수행 관련 회의 준비 및 참석
5.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수행협력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수행협력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행협력기관은 연구제안서 등 비공개 자료를 특허기술동향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주관부처 수요조사) ① 특허청장은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 연구개발사업 주관부처(이하 "주관부처"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관부처,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 수행단계(기획, 선정, 평가 등)
2. 연구개발사업별 특허기술동향조사 예상 과제수 및 연구개발 추진 일정
3. 복수의 연구개발사업이 신청된 경우, 연구개발사업간의 특허기술동향조사 우선 순위(이하 "부처 수요조사 우선 순위"라 한다)
4.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명단, 연락처
5. 예산규모, 사업개요 및 특허분석의 지원필요성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부처 수요조사 기간 중 관련 자료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관부처의 수요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특허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의 주관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대상 확정) ① 특허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 후보를 지정하고 제2항의 선정원칙에 따라 사업대상을 확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2. 파급효과
 3. 부처 수요조사 우선 순위
 4. 특허기술동향조사 수행 시기
 5. 특허조사 가능성 및 특허조사 최소 기간 제공 여부
 6. 그 밖에 사업대상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대상 확정시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과 같은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와 사업 대상 확정 후 추가로 사업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특허청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부처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특허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처 수요조사 결과 및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특허기술동향조사 개수 등을 포함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수행협력기관 등록, 선정 및 계약

제11조(수행협력기관 등록 계획 공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수행할 수행협력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계획 공고에는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수행협력기관 등록 및 선정방법,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일정 및 과제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수행협력기관 등록 요건) ① 수행협력기관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한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가. 문헌 : 한국, 일본, 미국, EPO 및 WIPO의 특허·실용신안문헌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을 것
 - 나. 장비 : 전산검색용 장비
2.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3.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인력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 가. 3명 이상의 정식 고용계약 인력을 구비하고 있을 것
 -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학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것
 -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분야의 조사인력인 경우: 그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그 분야의 3년제 전문학사이고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와 그 분야의 2년제 전문학사이며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디자인 분야의 조사인력인 경우: 디자인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디자인 분야의 3년제 전문학사이고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디자인 분야의 2년제 전문학사이고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및 디자인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학사 이상의 학위이고 디자인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검색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일 것

(1) 특허기술동향조사 관련 업무[특허청의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특허정보 분석 사업을 포함한다)·선행기술조사 사업과 특허청에서의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말한다]를 2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40시간 이상의 특허기술동향조사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보안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보안관리 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전용사무실, 디지털권한관리 기술 등의 전자문서 보안 프로그램, 서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및 자료 등에 대한 보안통제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그 밖에 수행협력기관 요건으로 필요한 사항은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행협력기관 등록 신청) ① 수행협력기관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수행협력기관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원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4. 납세증명원(원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5.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회계 감사보고서

6.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의 정식 고용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그 밖에 수행협력기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행협력기관 등록)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수행협력기관으로 등록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된 수행협력기관의 등록 요건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수행협력기관 등록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④ 수행협력기관은 조사인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2조의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수행협력기관 선정 계획 공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수행협력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수행할 수행협력기관 선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정계획 공고에는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협력기관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일정 및 과제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수행협력기관 선정 신청) ① 제15조의 선정 계획 공고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별 특허기술동향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행협력기관은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정신청에는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과제별 조사인력 현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17조(수행협력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된 수행협력기관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협력기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의 내부위원,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담당자, 연구기획위원, 외부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수행협력기관 평가시에는 해당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8조(수행협력기관 선정)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협력기관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단, 선정평가표 등에 관한 것은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협력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협력기관에게 통보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행협력기관 평가를 전후하여 현장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수행실적이 없는 신규 수행협력기관을 우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행협력기관 사업수행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1항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특허청장은 과제수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수행협력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시 수행협력기관과의 계약 내용 등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협력기관으로 등록된 신청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주관기관

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수행협력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였을 경우 승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행협력기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특허청이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용역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2. 수행협력기관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수행협력기관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수행협력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수행협력기관이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수행협력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계약보증금을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 수행협력기관은 해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고 손해된 경비는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제5장 사업의 관리, 평가 및 결과보고

제22조(진도관리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수행실적 및 향후 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진도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특허기술동향조사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협력기관에게 진도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기술동향조사 수행실적
2.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

제23조(특허기술동향조사 결과의 평가) ① 특허기술동향조사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관기관의 과제관리자 및 연구개발사업 담당자를 포함하는 2인 이상의 평가자가 과제별로 종료 전후에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각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평가 내용 및 항목 등 세부사항은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평가자가 60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평가표의 종합의견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수행협력기관의 당

해연도 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4조(진도관리 및 평가 등에 따른 조치)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3조제4항의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협력기관에 경고 조치를 취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도보고서 요청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 특허기술동향조사 과제 수행을 정해진 기일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의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인력이 실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조사인력의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6. 수행협력기관의 조사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제4호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7. 수행협력기관의 조사인력이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외에 특허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그 밖에 특허정보 분석사업에 참여하는 사실을 주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때 지체일수마다 계약단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수행협력기관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잔금 지급시 공제한다.

④ 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고를 2회 이상 받거나 제23조제4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행협력기관에 대해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수행협력기관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심의위원회)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4조제6항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허청 사업 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산·학·연·관의 기술·특허·법률 전문가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의 개최 및 의결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의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 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한다.

제26조(주관기관의 지정 취소 등) 특허청장은 주관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특허기술 동향조사 보고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특허기술동향조사 과제 리스트
2. 수행협력기관이 실시한 특허기술동향조사 현황
3.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4. 연구기획위원 및 선정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단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징수 또는 잔금 지급시 공제한다.

③ 수행협력기관은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46호, 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수행협력기관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①기 관 명			②대 표 자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구 분	특허정보 업체 <input type="checkbox"/> 변리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⑥ 설립년월일					
⑦ 신청인원	책임연구원	명	참여연구원	명	
⑧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	유선전화	휴대폰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술 동향조사 수행협력기관으로 등록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서약서 각 1부					
- 제공된 서약서 양식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수매의 서약서를 제출(수기 서명)					
4. 납세증명원 (원본) 각 1부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5.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회계 감사보고서					
6. 정식 고용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수행계획서				
신청인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구분	특허정보 업체 <input type="checkbox"/> 변리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⑥ 신청사업명				
⑦ 신청과제군 연번				
<p>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술 동향조사 수행협력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귀하</p>				